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5157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노동환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247,026원 및 그 중 18,246,831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9. 9. 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9. 9. 9. 접수 제12858호로 마친 A 지분 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9. 1. 25.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9. 1. 2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 A는 C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여 2019. 12.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4. 20. C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8,584,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2020. 6. 2.까지 337,19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246,831원(=대위변제금 18,584,023원 - 회수금액 337,192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위 일부금원 회수일인 2020. 6. 2.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95원이다.

4)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연 7%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와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2019. 9. 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들의 이혼 등

1) 피고 A와 피고 B은 2004. 5.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E 2005년생)을 두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9. 11. 5. 협의이혼 하였다.

2) 피고 A와 피고 B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는 피고 B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경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은 피고 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지연손해금을 합한 18,247,026원(=대위변제금 잔액 18,246,831원 + 앞서 본 일부 회수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위 일부금원 회수일인 2020. 6. 2.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1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18,246,8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구상금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받은 것이고,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C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한 2020. 4. 20.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9. 9. 7.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19. 12. 14. 피고 A가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04. 5.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11. 5. 협의이혼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A가 그 무렵인 2019. 9. 7. 피고 B에게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을 증여하고, 현재까지 피고 B이 그 자녀와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9. 9. 7. 당시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피고 B은 혼인생활 중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왔고 그 밖에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해왔던 점, ③ 피고들은 이혼 당시 그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추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받은 재산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혼인생활 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인데, 결과적으로 피고 B이 위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된 점, ⑤ 피고 B은 앞으로도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지하1층 연립주택 167.55㎡

1층 연립주택 157.83㎡

2층 연립주택 157.83㎡

3층 연립주택 157.83㎡

4층 연립주택 157.8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49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7.2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96분의 49.6

